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EK205)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기구,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목표기준가격 도달 후, 보유자산을 매도한 후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운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트러스톤 핀셋 플러스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이득을 획득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A클래스 기준 누적기준가격 1,070원)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보유자산을 매도하고, 운용전환완료일부터 국내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최초설정일 ~ 운용전환완료일 전일]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완료일 전까지는 국내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은 성장 유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등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 운용전략 : 단기채 ETF, 종합채권 또는 장기국채 ETF에 투자하여 기준금리 또는 CD 금리 수준의 안정적인 이자수익 획득 예상, 국내 채권은 채권 ETF 대비 국고채 10년 등 자본이득 추구에 있어 상대적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할 수 있음 -주식 운용전략 : 성장유망 기업, 지배구조개선 기업, 구조적 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핵심 투자 [운용전환완료일 ~ 투자신탁 해지일] 운용전환완료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는 보유자산을 매도하고,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목표전환 관련 용어 설명] ① 누적기준가격 : 이익금이 분배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가격 ② 목표기준가격¹⁾ : A클래스 기준 누적기준가격 1,070원 ③ 운용전환기준일 : ②의 목표기준가격이 달성되는 날 ④ 운용전환완료일 : 운용전환기준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1) 목표기준가격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A클래스의 누적기준가격으로 함. 다만, A클래스가 설정이 되지 않거나 목표기준가격에 달성되기 전에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으로 함. 가. A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Ae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나. Ae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다. C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e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라. Ce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S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마. C-S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p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바. Cp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p-E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	--

	사. Cp-E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p2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아. Cp2클래스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p2-E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 다만, Cp2-E 클래스의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한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재간접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추가납입불가), 종류형								
투자비용	- 운용전환완료일 이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이내	0.735	0.300	0.730	0.793	183	266	3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235	0.800	1.000	1.293	137	274	4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85	0.150	0.450	0.643	118	186	2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835	0.400	0.570	0.893	95	189	284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전환완료일 포함)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이내	0.125	0.010	0.730	0.179	15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135	0.020	1.000	0.135	79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120	0.005	0.450	0.120	9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125	0.010	0.570	0.125	57	-	-
	(주 1) ‘1,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목표수익률인 7%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의 비용 예시는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해당 이후 시점에 전환되는 경우의 예시는 37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기간 동안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을 경우,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5.4.30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운용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는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보유자산을 매도하므로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에 따른 급격한 하락 및 매매비용 발생 등에 따라 최종 실현수익률이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 만기 위험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 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 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 방식 변경 및 중단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기구 유동성 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운용전환완료일 전일까지]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 영업일에 지급 [운용전환완료일부터 해지일까지]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대상	과세 시기	세율	세액 공제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2025.6.9 ~ 2025.6.20	모집, 매출 총액	10 조좌. 단, 모집기간 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50 억 원 이하(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이 집합투자 기구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5.5.30.	존속 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 년까지 ※ 신탁계약기간 이내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2.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 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 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tr><td rowspan="3">기타</td><td>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td></tr><tr><td>고유재산 (C-S)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고유재산 (C-S)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5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													
		고유재산 (C-S)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